

1990년도 대체에너지 이용보급 자금지원 안내

1990년도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을 위한 석유사업기금 지원지침(동력자원부 공고 제90-6호) 중 대체에너지이용촉진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구 分	시 설 자 금	운 전 자 금	
지 원 대 상	대체에너지 이용시설 설치자 대체에너지 이용기자재 생산자 대체에너지 생산공급자	대체에너지 생산공급자 또는 협동조합	
지 원 규 모	200억원		
지 원 조 건	이 자 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융자비율	연리 5% 최장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내 동일사업자당 20억원 중소기업, 개인, 공공기업체 (소요자금의 90% 이내) 대기업(소요자금의 50%, 이내)	연리 10% 최장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이내 동일사업자당 5억원 소요자금의 50% 이내
자 원 절 차	에너지관리공단의 융자추천을 받아 융자취급은행에 신청 (500만원 이하의 태양열이용시설은 융자취급은행에 직접 신청)		
취 급 은 행	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장기신용은행, 한국외환은행, 한국주택은행, 국민은행, 시중은행, 지방은행, 농협중앙회, 수협 및 축협중앙회		

- 융자한도 중 산업용 메탄가스 발생이용시설과 산업용 폐기를 소각열이용시설의 경우는 10억원임.
- 융자비율(중소기업) 중 산업용 메탄가스 발생이용시설, 산업용 폐기를 소각열이용시설, 대체에너지이용 기자재의 생산시설, 대체에너지의 생산공급시설(대체탄 제외)의 경우는 70% 이내이며, 소요자금 500만원 이하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100% 이내임.
- 문의처(동력자원부 대체에너지과 : 500-2743)

동 력 자 원 부